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39

발의연월일: 2024. 11. 25.

발 의 자:이병진·문대림·박홍배

조인철 · 임미애 · 소병훈

이재관 • 이상식 • 이원택

윤준병 · 서삼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축산물사육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도축및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제적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축, 수입, 유통·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신설 등).

법률 제 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6호 중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 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 4.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제34조제1항제17호 중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벌칙) ① (생 략)	제3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u>에 처한다.</u>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
	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u>자</u>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
	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
	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거짓으로
	<u>한 자</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③</u>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 / 원 레 기 기 ()
1. ~ 5. (생략) 6. 게11조게5하우 의바침어 이	1. ~ 5. (현행과 같음) 6
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	0아니한 자

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의2. (생략)

 6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

 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

 한 자

6의4. ~ 7. (생략)

-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 별표를 붙이지 <u>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u>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 9. ~ 12. (생략)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6. (생략)
- 17. 제18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u>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u>

18. ~ 21. (생략)

② (생 략)

6의2. (현행과 같음) <<u>삭 제></u>

6의4. ~ 7. (현행과 같음)

<u>아니한 자</u>	
9. ~ 12.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1. ~ 16. (현행과 같음) 17	
<u>아니</u> <u>자</u> 18. ~ 21. (현행과 같음)	 한

② (현행과 같음)